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119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2. 5. 31.

판결 선고2022. 7. 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717,819원 및 그 중 9,777,430원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1. 9.자 증여계약은 25,606,7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25,606,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8. 7. 23.경 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3. 2. 13.,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4%로 하여 대출하였다.

2) 위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D는 2019. 12. 16.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마쳤다.

3) 2021. 4. 2. 현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15,717,819원(= 원금 9,777,430원 + 채권양수 전 이자 1,809,469원 + 채권양수 후 이자 3,130,920원)이므로, 위 금원 및 위 금원 중 9,777,430원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386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2. 8. 'B는 E에게 21,031,299원 및 그 중 19,618,969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9. 2. 28. 확정된 후, E은 2019. 6.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2021. 4. 2.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30,245,799원(= 원금 19,618,969원 + 채권양수 전 이자 1,583,830원 + 채권양수 후 이자 9,043,000원)이다.

2) 한편, B는 D에 대하여 위 1. 가.의 1) 내지 3)과 같은 15,717,819원(= 원금 9,777,430원 + 채권양수 전 이자 1,809,469원 + 채권양수 후 이자 3,130,920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원고는

2021. 4. 2. 현재 B에 대하여 45,963,618원(= 위 1)의 30,245,799원 + 15,717,81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B는 2018. 11. 9.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90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증여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반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3,000,000원, G은행에 대하여 17,201,000원, H조합에 대하여 87,660,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하여 871,000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17,028,000원, E에 대하여 19,618,969원, D에 대하여 9,777,43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H조합,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형제자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B의 H조합 및 주식회사 L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F 주식회사의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을 제2호증도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26,000,00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 근저당이라 한다)와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 근저당이라 한다), ③ 청구금액 7,661,573원의 채권자 F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위 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2. 20.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고, 위 ③의 가압류 등기도 2018. 11. 16.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사해행위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0,000,000원인 사실, 위 ① 근저당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8,202,603원, 위 ②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은 10,190,68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41,606,713원(= 140,000,000원 - 88,202,603원 - 10,190,684원) 상당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인데,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반환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나. 1) 나)의 ①, ②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45,963,618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4,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 당시 ①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이 88,202,603원, ②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이 10,190,68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5,606,713원(= 124,000,000원 - 88,202,603원 - 10,190,684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보다 적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가 반환할 가액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5,606,7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06,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진영

별지

1) F의 가압류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더라도 33,945,140원의 공동담보가치가 남게 된다.